

中國에서의 環境犯罪

盧青錫*

< 차례 >

- I. 서 언
- II. 環境범죄의 일반이론
- III. 環境범죄에 대한 법률규정
- IV. 環境범죄의 처벌에 관한 중국법원의 입장
- V. 나가며

I. 序 言

환경보호를 위해 펼쳐온 인간의 그 동안의 활동은 기존의 환경정책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다. 기존의 환경정책을 다음의 세 문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1) 현재의 방식으로는 아무런 進展도 가져올 수 없다. (2) 그 대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대체로 잘 알려져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러한가? 경제에는 환경정책과 상반되는 이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이해관계가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는가가 문제이다.¹⁾

인간의 발전역사는 自然에 대한 開發歷史라고도 할 수 있다. 인간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痕迹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인간의 지나친 개발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自淨能力을 喪失하여 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문제는 오늘날 세계 각국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본 학자인 原田尙彦가 말한바와 같이 “환경의 파괴와 오염은 사회의 고도산업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환경문제는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나아가 선진국가에서도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²⁾ 심각한 環境汚染, 破壞와 環境事故는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人命피해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런 環境侵害에 대해 전통

* 中國 延邊大學校 法學院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1) 클라우스 미하엘 마이어-아비히, 박명선 옮김, <자연을 위한 항거>, 도서출판 도요새, 2001년, 13면.

2) [日] 原田尙彦 <환경법> 법률출판사, 1999, 2면.

적으로 民法, 行政法적 수단으로 規制를 하고 救濟를 하여 왔다. 그렇지만 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민법과 행정법의 주목적이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먼 私인에 대한 보호와 국가통치질서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면 환경오염과 파괴행위에 대한 制裁가 유사행위의 재 발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환경문제가 인간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긴밀히 관계가 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환경침해에 대해 더욱 강력한 制裁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즉 환경문제를 刑法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환경범죄이론을 도입하여 刑事적으로 처벌하여 환경범죄의 엄중성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실질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環境刑事立法활동을 통해 環境刑事犯罪를 규정하고 있고 환경 관련 判例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환경범죄와 관련한 중국의 環境刑法理論발전과 法律規定, 판례를 고찰해 보려 한다.

II. 環境犯罪의 一般理論

1. 環境범죄의 개념

環境犯罪를 環境刑事責任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릇 環境法을 위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 혹은 환경파괴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법의 규정에 따라 刑罰을 받아야 할 행위³⁾를 말한다. 환경범죄는 刑事責任의 一種이고 또한 환경법률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환경범죄의 개념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다. 環境犯罪는 환경보호법규를 위반하고 자연환경과 자연자원을 파괴한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陳興良, <刑法疏議>, 중국인민공안대학출판사, 1997년, 제533면); 破壞環境資源保護罪는 자연인 혹은 단위에서 국가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혹은 과실로 토지, 수체, 대기 등 생태환경을 오염하고, 혹은 불법으로 광산, 경작지, 삼림 혹은 임목을 개발하고 파괴하고, 야생동물, 식물, 수산물 등 자연자원을 위해하여 상황이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관풍림 主編, <中國新刑法理論研究>, 인민법원출판사, 1997년, 제786면); 破壞環境資源保護罪는 자연인 혹은 단위에서 국가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혹은 과실로 토지, 수체, 대기 등 생태환경을 오염하고, 혹은 삼림, 진귀수목, 진귀하고 멸종위기 동물, 야생동물, 수산물, 경작지, 광산 등 자연자원을 파괴하여 상황이 엄중 혹은 후과가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高西江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刑法的修訂與適用>, 中國方正출판사, 1997년, 제710면); 破壞環境資源保護罪는 환경자원보호법률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하고 광산, 삼림, 野生珍貴동식물자원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曹子丹 主編, <中華人民共和國刑法精解>,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97년, 제307조).

2. 環境범죄의 主體

1) 自然人

형사범죄영역에서 줄곧 “죄급개인(罪及個人)”의 원칙을 견지하여 왔다. 즉 범죄는 개인의 의식적인 사회를 危害하는 행위로 오직 생명이 있는 인간(자연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환경범죄에 있어서의 주체인 자연인이 개개인의 환경오염 혹은 환경과 괴행위를 통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형법의 규정에 따라 만 16세가 된 자연인이 환경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6세미만인 자와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자연인은 환경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 외에 1997년 중국의 개정형법에서는 자연인의 환경범죄를 규정하는 외에 特殊主體에 대한 환경범죄행위도 규정을 하고 있다. 즉 國家公務員들의 환경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다. 刑法의 瀆職罪에 있어서 林業 주관부문의 공무원들의 林業採伐許可證을 濫發한 罪(형법 제407조4), 환경보호감독관리부문의 공무원들의 重大失職罪(環境監管失職罪)(형법 제408조5)와 動植物檢疫부문의 공무원들의 循私舞弊罪(형법 제413조6) 등이 그것이다.

2) 法人

중국에서도 自然人이 아닌 法人이 환경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各异하였다.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논쟁은 1997년 형법 개정 시 法人犯罪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논쟁의 의의가 없어졌다. 이제는 법인범죄의 이론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에 관심을 돌려 이를 더욱 강화하고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의 환경범죄는 합법적인 법인이 계속적인 존속기한 내에 환경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법인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불법으로 설립한 조직이나 이제는

- 4) 임업주관부문의 공무원이 森林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年 채벌한도액을 초과하여 林木採伐허가증을 발급 혹은 규정을 위반하고 채벌허가증을 濫發하여 상황이 엄중하여 森林을 엄중히 파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한다.
- 5) 환경보호감독관리직책이 있는 국가공무원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아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중대한 손실 혹은 사람을 상하거나 죽게 한 심각한 결과를 발생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한다.
- 6) 동식물검역기관의 검역인원들이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검역결과를 위조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한다. 위에 규정한 검역인원들이 책임을 다 하지 않아 검역을 하여야 할 檢疫物에 대해 검역을 하지 않고 혹은 검역증의 발급을 지연, 검역증을 잘못 발급하여 국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한다.

존재하지 않는 법인의 명의로 환경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의 주체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다. 또 법인범죄의 2重 주체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생명이 없는 실체’로 회사, 기업, 기관, 단체 등 법인주체를 말하고, 둘째는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자연인 주체이다. 즉 법인대표, 직접적인 책임자이다. 이는 자연인주체와 구별되는 점이기도 하다. 법인은 자연인으로 구성된 독립된 주체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社會關係속에 존재하고 있고 법인의 의사대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법인의 意志는 법인대표와 직접적인 책임자들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런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법인대표와 직접적인 책임자들은 법인을 대표하여 행위를 하였기에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모두 책임이 있기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즉 법인의 환경범죄에 대해 兩罰制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실 사회에서 환경침해는 기업체나 회사의 행위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다반이다. 規模 상에서나 瀕度면에서나 破壞力면에서나 모두 자연인의 행위능력범위를 넘어선 파괴력이 엄청난 고의적인 행위 혹은 방심한 행위의 결과들이다. 이런 취지에서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의식적인 行爲能力이 있고 責任能力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의 범죄행위에 따른 受刑능력도 인정하여야 한다. 비록 생명력이 없는 법인에 대해 자연인에 대한 生命刑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財産刑과 資格刑의 적용은 가능한 것이다. 자연인에 적용하고 있는 범죄능력과 受刑능력의 主體는 동일하다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법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 법인에 대한 이런 兩罰制를 통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資源을 절약하고 종합적인 資源利用을 통해 經濟效益·社會效益·環境效益의 통합을 이루게 하여야 한다. 양벌규정의 起源은 業務主 처벌규정으로서 후에 이 업무주가 자연인인 업무 주 이외에 법인인 업무 주까지로 확장된 것이다⁷⁾.

중국은 <형법> 제2장 제4절에 “單位犯罪”를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형사책임에 대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에서 “단위범죄”의 범위는 “법인범죄”에 비해 그 範圍가 훨씬 넓다. 즉 모든 國有企業, 私企業, 外資企業 등 기업체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立法, 行政, 司法기관과 그 하급기관들, 각 사회단체 등도 “단위”에 포함된다. 총체적으로 법인의 환경범죄를 긍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조병선, <환경형법>, 청주대학교출판부, 1998년, 328면.

3. 環境범죄의 客觀적인 特徵

중국 형법에 규정한 環境범죄의 客觀적인 形態를 보면 아래의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結果犯의 형식으로 행위자가 모종의 環境위법행위를 하여 실제로 環境오염 혹은 파괴결과를 초래, 혹은 생명, 건강과 公共과 私人的 財産의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環境범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338조의 重大環境汚染事故罪(중대한 環境오염사고죄), 제340조의 非法捕撈水産品罪(불법으로 수산품을 포획한 죄) 등이 있다. 형법에 규정한 環境범죄 중 結果犯 規定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環境형법의 입법이론이 아직은 초창기에 있어 전통 形법이론의 요구를 많이 따른 결과이다. 다른 하나는 行爲犯의 형식으로 행위자가 環境을 오염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현실적인 危害결과를 초래하였는지와 侵害 대상이 위협에 처해있는지를 불문하고 環境범죄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형법 제339조 제1항의 非法處置進口的固體廢物罪(불법으로 수입한 고체폐기물을 處置한 죄), 제344조의 非法採伐·毀壞珍貴樹木罪(불법으로 진귀한 수목을 採伐하고 훼손한 죄) 등이 있다.

형법에 규정한 14개의 環境범죄 중 대부분이 結果犯에 대한 規定이고 일부만 行爲犯에 대한 規定이다. 國외의 일부 國家에서의 危險犯과 같은 規定은 아직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環境범죄의 特徵을 보면 일반적인 刑事범죄와는 다른 것이 있다. 즉 행위자가 일단 環境을 오염 혹은 파괴행위를 하였을 경우 環境자원에 대한 현실적인 혹은 잠재적인 위협은 장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초래한 손실은 經濟적으로 計算할 수가 없다. 만약 법률규정으로 結果犯만 처벌한다면 이는 環境형법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되어 環境범죄를 예방하는데 부족하다. 중국형법에 오직 結果犯과 行爲犯에 대해서만 規定하고 있는데 이는 現代社會의 環境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環境오염 혹은 파괴행위로 인하여 環境자원, 인간의 생명 혹은 財産을 威脅상태에 처하게 하는 威脅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여야 한다.

4. 環境범죄의 保護법익

保護法益이란 단어 그대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혹은 가치’를 말한다. 環境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의 保護법익은 무엇인가 혹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 인간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保護법익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생태학적인 각도에서의 자연환경 그 자체를 保護법익으로 볼 것인가?

전통적인 법익보호관점에서 형법은 環境, 자연환경을 보호하지 않는다. 즉 환경을 보호 법익으로 보지 않는다. 오직 인간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상 법익이 환경파괴로 인하여 손해 혹은 침해로 보았을 경우 형벌을 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환경은 이익의 귀속주체가 아니므로 이익을 반영할 수 없다. 환경이익은 오직 인간을 통하여 표현이 되므로 인간에 의해 반영된 이익만이 형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환경법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調整하는 법이다. 인간은 자연(人類是自然的產物)의 變遷과 발전과정에서 產生되었고 또 大自然속에서 자연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인간의 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침해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존하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사막화, 수자원부족, 해수면의 상승 등 지구환경문제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은 환경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오염 혹은 파괴된 환경을 보호하고 원상태로 회복하여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범죄의 보호법익은 응당 개개인의 이익범위를 넘어서 전체 인간과 관련된 環境에 두어야 할 것이다. 비록 抽象적이긴 하지만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과 더불어 생존하는 기타 생물을 보호하게 되고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있는 인간 개개인의 이익도 보호하여 주는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 혹은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자연정복의 인간의식은 개변하여야 할 것이다.

5. 환경범죄의 類型

환경범죄의 주체의 不同에 따라 自然人범죄와 法人범죄로 분류하고 또 환경에 대한 行爲의 부동에 따라 環境汚染범죄와 環境破壞범죄로 분류하고 있다.

1) 自然人犯罪와 法人犯罪

자연인이 환경의 要素들인 물·대기·토양·해양·산림·광물자원 등에 대해 오염 혹은 파괴적인 행위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자연인의 환경범죄는 규모나 危害정도 등 면에서 볼 때 자연인의 행위능력의 제한으로 결과가 微弱한 것이 대부분이다. 특수한 경우에는 그 위해정도가 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저수지나 상수원 등에 독약을 투입한 경우에는 그 위해범위가 클 수 있다.

반면 법인은 자연인에 비해 규모나 파괴능력 등 면에서 행위능력이 엄청나게 크다. 법인에 의한 환경오염과 파괴행위 역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심지어는 환경을 회복 불가능하게 파괴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법인의 일방적인 경제이익을 높이기 위한 행위의 결과이다. 경우에 따라서 국가도 특수한 환경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국가를 하나의 行爲主體로 볼 경우 국가경제력을 높이고 경제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면서 또 環境犧牲을 대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예를 들면 동남아국가와 브라질 등의 熱帶雨林지역의 국가들에서는 자국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熱帶雨林的 森林을 대량 채벌하여 해마다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지구의 肺로 불리는 열대우림지역은 지역의 氣候, 나아가 地球의 기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경제발전의 길'은 발달한 국가들에서 이미 경험했던 길인데 지금은 개발도상국에서 불가피하게 이 길을 또 걷고 있다.

2) 環境汚染犯罪와 環境破壞犯罪

環境汚染犯罪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생산과 생활과정에서 환경요소중의 水·大氣·土壤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버림으로서 수질·대기·토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오염행위의 실질은 환경에 과다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의 自淨능력을 초월하여 環境質量的 低下를 초래하게 되고 환경의 위험상태를 초래한다. 예를 들면 수질이 오염되어 음용수·관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하고 생물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 토양이 오염되어 곡물을 재배할 수 없고 토양에 재배한 농작물과 기타 식물들이 죽어가는 경우 등이 환경오염에 속한다. 이는 오염물질이란 媒體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환경오염 범죄는 故意행위로 구성될 수도 있고 過失행위로도 구성될 수도 있다.

環境破壞犯罪는 자연인 혹은 법인의 자연자원을 개발·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요소중의 山林·동식물자원·광물자원·토지자원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한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대면적의 森林을 채벌하거나 혹은 진귀한 수목을 훼손한 경우; 국가에서 보호하는 동식물자원을 파괴한 것; 광물자원에 대한 채굴이 파괴적인 것; 토지자원 특히는 경작지를 파괴한 것 등이 환경파괴범죄에 속한다. 이는 인간이 직접 환경을 개발하면서 자연에 過度하게 물질과 에너지를 요구하여 환경과 資源의 재생능력의 한도를 초월하여 멸망을 초래하게 되거나 생태평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인간과 국가의 環境權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간의 건강, 생명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위협을 주게 된다. 통상 고의적인 행위로 構成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Ⅲ. 環境犯罪에 대한 法律規定

1. 中國에서의 環境形법의 발전

中國에서 環境보호와 그에 대한 입법 활동이 비교적 늦게 진행이 되어 環境을 오염하고 파괴하는 違法행위에 대해 1970년대에는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였다. 그래서 1979년 제정한 刑法에 環境범죄에 관한 專門 규정⁸⁾을 두지 못하였다. 경제가 점차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環境문제도 점점 돌출하게 나타나고 環境위법행위도 점점 많아져 심지어는 심각한 環境오염과 環境과괴현상도 종종 발생하였다. 그런데 형법에 이런 심각한 環境오염과 과괴현상 즉 環境위법행위에 대한 刑事制裁규정이 없기에 應당 刑事責任을 追究해야할 環境위법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行政處罰로 대체하는 것이 많았다. 그후 環境立法의 발전과 더불어 각종 污染防治法과 資源保護法에 環境범죄현상을 제재하는 일부 형벌규정을 두었다. 예를 들면 <環境保護法>, <水污染防治法>, <森林法>, <野生動物保護法>, <鑛山資源法> 등 법률의 法律責任 章에 형벌책임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형벌조항이 대부분이 抽象적으로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依法追究刑事責任)”고만 규정이 되어 있어 결국은 형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污染防治法 중의 刑罰조항을 適用한 예는 더욱이 적었다. 이는 環境범죄에 대한 규정의 실현가능성이 결핍되어 구체적으로 適用하기가 곤란하여 應당 제재할 環境범죄행위를 더욱 放縱하기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대 중기에 들어서면서 일부 학자⁹⁾들은 環境형사입법을 강화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형법에 環境범죄에 대한 전문 조항을 增設한 다든가 혹은 전문 章節을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環境문제에 대해 중요시하지 않아 環境범죄에 대한 입법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1990년대 이후 中國에서 市場經濟체제를 도입하여 경제가 발전하면서 단순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環境보

8) 1979년 제정한 <형법>에 環境범죄 관련 직접적인 규정은 없었지만 環境범죄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와 처벌규정은 다소 두고 있다. 조문으로는 제105조, 제106조, 제115조, 제129조, 제130조, 제187조가 있다. 위 조항은 공공안전, 사회주의경제질서를 파괴하고 危害하는 측면에서 한 규정으로 생태환경과 생활환경보호의 내용은 체현이 되지 않았고 環境을 危害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전면적이지 못하고 처벌도 경하다.

付立忠, <環境形법학>, 中國法政출판사, 2001년, 155-156면.

9) 中國 국내에서 처음으로 環境形법에 관련한 論文으로는 1982년 程正康이 <中國環境科學> 제4호에 발표한 <試論危害環境罪>로 危害環境罪의 설립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표하였다.

호법률의 규정을 무시하고 환경을 오염하고 파괴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환경과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¹⁰⁾. 이로 인하여 중국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악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해 國家環境保護局에서는 전문가들을 組織하여 환경범죄에 대한 연구를 거쳐 全國人民代表大會에 立法建議를 하였고 환경법학과와 형법학과의 학자들도 環境刑法에 대한 연구를 하여 많은 저서와 論文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1997년 刑法개정시에 많은 참조가 되었다. 1997년 형법개정시 제6장 제6절에 “환경자원보호과괴죄(破壞環境資源保護罪)”를 新設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환경보호발전의 必然的인 要求와 趨勢이기도 하고 형사입법과 환경입법의 발전의 결과이기도 하다.

1) 환경범죄의 형법상의 規定

중국은 刑法에 “환경자원보호과괴죄(破壞環境資源保護罪)”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환경법에도 형벌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법, 수질오염방지법, 대기오염방지법, 해양환경보호법, 고체폐기물오염환경방지법,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야생동물보호법, 鑛產資源法, 森林法 등에 刑事처벌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2) 구체적인 犯罪類型

형법 제338조에서 제346조까지 총9개 條에 環境資源犯罪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의 罪名은 총 14개¹¹⁾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의 환경범죄에 대한 규정을 대체로 環境汚染과 環境破壞에 대한 刑事責任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 環境汚染에 따른 刑事責任

가. 重大環境汚染事故¹²⁾罪

重大環境汚染事故罪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토지·水體·대기에 방사성물질을 함유

10) 1994년 전국적으로 공업오염사고가 3001건이나 발생하였다. <環境統計公報> 1994년.

11) 14개의 환경범죄 죄명으로는 1. 重大環境汚染事故罪, 2. 非法處置進口固體廢物罪, 3. 擅自進口固體廢物罪, 4. 非法捕撈水產品罪, 5. 非法獵捕·殺害珍貴·瀕危野生動物罪, 6. 非法收購·運輸珍貴·瀕危野生動物·珍貴·瀕危野生動物製品罪, 7. 非法狩獵罪, 8. 非法占用農地罪, 9. 非法採鑛罪, 10. 破壞性採鑛罪, 11. 非法採伐·毀壞珍貴樹木罪, 12. 盜伐林木罪, 13. 濫伐林木罪, 14. 非法收購盜伐·濫伐林木罪가 있다.

12) 重大環境汚染事故의 경우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1987년 9월 10일, 국가환경보호국에서 발표한 <환경오염과 파괴사고의 보고에 대한 집행방법(報告環境汚染與破壞事故潛行辦法)>에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 즉 아래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대환경오염사고에 해당한다. 직접경제손실이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10만원 포함되지 않음); 사람에게 현저한 중독증상, 방사성상해 혹은 장애후과가 우려되는 경우; 군중성적인 중독증상이 발생할 경우; 환경오염으로 사회안정이 영향을 받을 경우; 환경에 중대한 危害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포함된다.

한 폐기물, 전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有毒물질 혹은 기타 위험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치함으로써 중대한 환경오염을 초래하여 공공재산의 중대한 손실 혹은 인명피해의 심각한 後果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본 범죄의 주체는 일반주체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본 범죄의 주체로 될 수 있고 單位¹³⁾도 본 범죄를 構成할수 있다. 主觀상에서 보통 過失로 인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이 법규정을 위반한 故意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客觀상에서는 국가의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3種의 환경오염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重大土地汚染事故罪는 토지에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전염병병원체를 함유한 폐기물, 有毒물질 혹은 기타 위험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¹⁴⁾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케 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重大水汚染事故罪는 <水汚染防治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水體에 임의로 오염물, 유독물질을 배출하여 중대한 수질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重大大氣汚染事故罪는 <大氣汚染防治法>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대기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그 외에 환경행정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환경을 오염한 罪는 환경보호의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이 책임을 소홀히 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가리키는데 瀆職罪의 일종으로 처벌한다. 이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¹⁵⁾에 처할 수 있다.

13) 중국의 立法은 1987년의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서 처음으로 單位犯罪에 대해 규정을 하였다. 1997년 개정형법 제2장 제4절에 전문 ‘단위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형법>제30조: “회사, 기업과 사업단위, 기관단체가 사회에 危害行爲를 하였을 경우 법률에 單位犯罪로 규정을 하였으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여기서 單位란 회사, 기업과 사업단위, 기관단체를 가리킨다.

周珂 <環境法>,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0년, 72면.

14)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의 경우는 最高人民檢察院 1989년 11월 30일에 발표한 “立案標準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5만 원 이상 경우에는 重大損失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5) 拘役: 拘役은 범죄자의 人身自由를 단기간 박탈하며 公安기관(경찰기관)에서 집행하는 형벌방법이다. 주로 죄가 경하고 단기간 구금하여야할 범죄자에게 적용한다. 집행기간 내에 매일 하루 내지 이틀정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노동에 참가하였을 경우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다. 拘役기간은 1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하이다.

重大環境汚染事故罪에 대한 量刑을 보면 <형법> 제338조에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 동시에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고 단독적으로 벌금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 後果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나. 進口境外固體廢物罪(임의로 國外에서 고체폐기물을 수입한 죄)

경제가 발달한 國家일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법적 제재가 엄격하여 본국에서 고체폐기물(生活폐기물과 有毒有害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점점 많이 들고 그에 따른 책임과 위험도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의 수출 또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반면 폐기물을 수입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외화(外匯)가 필요한 개발도상국 혹은 낙후한 국가들이다.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폐기물을 수입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현상을 막고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 제339조에 폐기물수입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국외에서 폐기물을 수입하여 쌓아두거나 처리하였을 위에 규정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경우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벌금형을併科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또 공무원 주관부문의 허가 없이 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原料로 사용하다가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인체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 외에 原料명의로 原料로 사용할 수 없는 固體폐기물, 液體폐기물과 氣體폐기물을 수입하였을 경우 <형법> 제152조의 제2항은 “세관의 감독을 회피하여 국외의 고체폐기물, 액체폐기물과 기체폐기물을 국내로 운송하고 그 상황이 엄중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부과 혹은 단독으로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단위에서 위 두 개 조항의 범죄를 범하였을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그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主管者와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해서는 위의 두 개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¹⁶⁾.

16)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 (4),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통과.

② 環境破壞에 따른 刑事責任

가. 非法捕撈水產品罪(불법으로 수산품을 포획한 죄)

非法捕撈水產品罪는 수산품보호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禁漁區, 禁漁期 혹은 사용이 금지된 漁具를 이용하여 水產品을 포획한 경우 상황이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

法律은 주로 <중화인민공화국 漁業法>과 기타 관련 법규를 말한다. 여기서 ‘상황이 심각한 행위’란 불법으로 포획한 수산품의 수량이 비교적 많은 경우; 一貫적으로 불법으로 수산품을 포획하는 경우; 사람을 조직하여 불법으로 수산품을 포획한 경우; 국가에서 重點保護하는 名品 혹은 稀貴수생생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경우; 불법으로 수산품을 포획하면서 漁業行政부문의 管理에 對抗하고 어업행정관리공무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 毀滅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수산자원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무릇 고의적으로 위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非法捕撈水產品罪로 처벌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0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나. 野生動物資源破壞罪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한 죄에는 3種의 罪名이 있다.

非法獵捕·殺害珍貴·瀕危野生動物罪¹⁷⁾(불법으로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살해한 죄)는 국가의 야생동물보호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살해한 행위를 말한다. 본 죄는 故意적이고 不法으로 국가에서 重點보호하는 1급, 2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살해한 자에 한해서만 본죄가 적용된다.

非法收購·運輸·出售珍貴·瀕危野生動物·珍貴·瀕危野生動物製品罪¹⁸⁾(불법으로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구입하고 운송하고 판매한 죄)는 국가의 야생동물보호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구입·운

17)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破壞野生動物資源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2000.12.11. 실시) 제1조: 形법 제341 제1항규정의 ‘珍貴·瀕危野生動物’은 국가중점보호야생동물명록의 국가1, 2급 보호야생동물, 瀕危野生動植物種國際貿易公約 부록1, 부록2의 야생동물 및 馴養繁殖한 上述 物種을 말한다.

18) 東北虎고기판매사건: 2000년 4월, 黑龍江省的 한 곡마단이 浙江省 溫州市에서 출연하면서 직원인 주 XX는 불법으로 양육한 東北虎를 江蘇省的 한 곡마단 직원 엄xx에게 8.5만원에 판매하였다. 11월에 東北虎가 병으로 죽어 東北虎고기를 모 호텔에 2.1만원에 판매기로 하였는데 경찰의 수사로 성사하지 못하였다. 절강성 慈溪市 인민법원에서는 금년 4월 5일, 1심에서 엄XX, 주XX 등 4인에게 非法收購, 運輸, 出售珍貴, 瀕危野生動物, 珍貴, 瀕危野生動物製品罪로 판결을 하였는데 유기징역의 합계가 총 30년이 되고 벌금은 인민폐로 총 2.9만원이나 된다. 4인은 이에 불복하여 上訴를 제기하였지만 2002년 6월 24일, 절강성 寧波市 中級 인민법원에서는 4인의 上訴를 기각하고 原審 판결을 유지한다는 終審裁定을 하였다. <法制日報>, 2002.6.25.

송·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본죄는 故意적이고 不法으로 국가에서 보호하는 진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과 그 제품을 구입, 운송, 판매한 자에게 적용된다. 珍貴·瀕危野生動物製品이란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원료로 이용하여 표본·식품·약품·복식 등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위의 두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 벌금형을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부과한다. 특별히 심각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형과 벌금형 혹은 재산몰수형을 부과한다.

非法狩獵罪(불법수렵죄)는 국가의 狩獵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고 禁獵區·禁獵期 혹은 사용이 금지된 도구·방법으로 수렵을 진행하여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한 행위를 말한다. 본죄는 고의적이고 불법으로 국가에서 중점 보호하는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외에 각종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管制¹⁹⁾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다. 非法占用農地罪 (불법으로 농지를 점용한 죄)

非法占用農地罪 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불법으로 비교적 많은 량의 농지를 타 용도로 이용하여 大量的 농지를 毀損한 행위²⁰⁾를 말한다. 본 죄는 자연인 혹은 법인이 고의적으로 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이루어진다. 토지사용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사용권을 취득하여야 하고 농지를 농지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죄의 量刑을 보면 <형법> 제342조와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과 벌금형을 부과 혹은 단독으로 처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9) 管制은 중국형법의 主刑에서 제일 경한 것으로 대상은 주로 범죄행위가 경하고 구속할 조건은 안 되고 일정한 人身自由는 제한하여야 할 범죄자에 대해 구속을 하지 않고 일정한 자유를 制限하는 공안 기관(경찰기관)의 감독하에서 개조하는 형벌이다. 기한은 3개월에서 2년 이하로 하고 범죄의 경합시에 는 최고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집행은 공안기관에서 한다.

20)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破壞土地資源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2000.6.22. 실시) 제3조 :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타용도로 이용하여 그 수량이 비교적 많아 경작지의 대량 훼손을 초래하였을 경우 형법 제342조의 규정에 따라 非法占用耕地罪로 처벌한다. (1). '수량이 비교적 많아'는 불법으로 기본농지를 5무이상 혹은 기본농지이외의 경작지를 10무이상 점용한 것을 말한다. (2). '경작지의 대량 훼손을 초래'은 불법으로 경작지를 점용하여 벽돌가마 건설, 무덤건설, 건물건축, 採沙, 채석, 채광, 取土, 고체폐기물처리 혹은 기타 비농업건설을 하여 기본농지 5畝이상 혹은 기본농지 이외의 경작지 10畝이상의 경작조건을 엄중히 훼손 혹은 오염한 행위를 말한다.

라. 鑛產資源법규를 위반한 죄

광산자원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죄는 2種이 있다.

非法採鑛罪(불법으로 채광한 죄)는 鑛產資源法の 규정을 위반하여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채광하거나²¹⁾ 혹은 國家에서 계획한 鑛區. 국민경제에 중대한 가치가 있는 鑛區와 타인의 採鑛범위내에서 採鑛한다든가 혹은 國家에서 채광보호정책을 실시하는 特種 광산자원을 채광하여 채광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광을 하여 광산자원의 파괴²²⁾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이루어진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3조 제1항과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과 벌금형을 부과 혹은 단독으로 처할 수 있다. 광산자원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破壞性採鑛罪(파괴적인 채광죄)는 鑛產資源法の 규정을 위반하여 파괴적인 채광방법으로 채굴하여 광산자원의 심각한 파괴²³⁾를 초래한 행위를 말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3조 제2항과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과 벌금을 부과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마. 森林資源법규를 위반한 죄

森林자원법규를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죄는 3種이 있다.

非法採伐·毀壞珍貴樹木罪(불법으로 진귀수목을 채벌하고 훼손한 죄)는 森林법의 규정

21)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非法採鑛, 破壞性採鑛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2003년 6월 3일 시행) 제2조: 아래의 경우는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採鑛”한 것에 속한다. 채광허가증이 없이 광산자원을 채굴한 경우; 채광허가증이 말소 혹은 취소당한 후에도 계속 광산자원을 채굴한 경우; 채광허가증에 규정한 채광범위인 鑛區를 초과하여 광산자원을 채굴한 경우; 채광허가증에 규정한 鑛種(광산종류)에 따라 광산자원을 채굴하지 않은 경우(共生, 半生鑛種은 제외); 기타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산자원을 채굴한 경우가 포함된다.

22)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非法採鑛, 破壞性採鑛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2003년 6월 3일 시행) 제3조: 불법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파괴한 광산자원의 가치가 인민폐 5만 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343조 1항에 규정한 ‘광산자원을 파괴’한 경우에 속하고, 그 가치가 인민폐 30만 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343조 1항에 규정한 ‘광산자원을 엄중히 파괴’한 경우에 속한다.

23)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非法採鑛, 破壞性採鑛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2003년 6월 3일 시행) 제5조: 파괴성적인 광산자원의 채굴로 초래한 광산자원의 가치가 인민폐 30만 원 이상인 경우 형법 제343조 2항에 규정한 ‘광산자원을 엄중히 파괴’한 경우에 속한다.

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진귀한 수목을 채벌, 훼손한 행위²⁴⁾를 말한다. ‘珍貴한 樹木’이라면 省級 이상 임업주관부문 혹은 기타 부문에서 확정된 특수한 역사적 기념의의, 과학연구가치, 문화적, 考古학적 의미가 있는 것,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 진귀한 수목과 國家重點保護野生植物名錄에 수록된 樹木을 말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4조와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와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盜伐林木罪(임목을 도벌한 죄)는 森林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교적 많은 수량의 森林과 기타 임목을 도벌한 행위를 말한다. “비교적 많은 수량”은 통상 林區에서는 2-5m³ 혹은 幼木 100-250그루를 도벌한 것; 林區外에서는 1-2.5m³ 혹은 幼木 50-125그루를 도벌한 한 것; 혹은 위의 손실에 상당한 액수의 임목을 도벌한 것을 말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5조 제1항과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의 부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도벌한 임목의 수량이 심각할 경우²⁵⁾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하고 도벌한 임목의 수량이 특별히 많을 경우²⁶⁾ 7년 이상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내의 森林 혹은 기타 임목을 도벌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濫伐林木罪(임목을 남벌한 죄)는 森林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교적 많은 수량의 森林과 기타 임목을 濫伐한 행위를 말한다. 비록 임업주관부문의 채벌허가가 있었지만 허가범위와 허가임목을 채벌하지 않고 拘役을 벗어나 임의로 채벌하는 것을 말한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5조 제2항과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의 부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임목의 수량이 엄청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24) <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破壞森林資源刑事案件具體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2000.12.11. 실시) 제2조 : 아래의 경우는 진귀수목을 불법채벌, 훼손한 심각한 행위에 속한다. (1). 불법으로 진귀수목을 2그루이상 혹은 진귀수목을 훼손하여 3그루이상을 죽게한 행위; (2). 불법으로 진귀수목을 2m³이상 채벌한 행위; (3). 주도적으로 진귀수목을 불법채벌 혹은 훼손을 조직, 계획, 지휘한 행위; (4). 기타 상황이 심각한 행위.

25) “수량이 엄청나다”는 기준은 임구에서 20-30m³ 혹은 유목 1000-1500그루를 盜伐한 것; 임구외에서 10-20m³ 혹은 유목 500-1000그루를 도벌한 것을 말한다.

26) “특별히 많을 경우”의 기준은 임구내에서 100m³이상 혹은 유목 5000그루이상을 도벌한 것; 임구외에서 50m³이상 혹은 유목 2500그루이상을 도벌한 것을 말한다.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내의 森林 혹은 기타 임목을 남벌할 경우 가중 처벌한다.

非法收購盜伐·濫伐林木罪(불법으로 도발 혹은 남벌한 임목을 구입한 죄)는 국가의 임업관리제도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林區내에서 도벌·남벌한 임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목을 구입하여 그 상황이 심각한 행위를 말한다. 林區外에서 위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본 죄의 양형을 보면 <형법> 제345조 제3항과 제346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拘役 혹은 管制的 부과 혹은 단독으로 벌금형에 처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처하고 직접적인 법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서는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내의 森林 혹은 기타 임목을 도벌·남벌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한다.²⁷⁾

3) 환경범죄의 刑罰體系

<형법> 제32조: 형벌은 主刑과 附加刑으로 나눈다. 제33조는 “主刑은 管制, 拘役, 유기형, 무기형, 사형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34조는 “부가형은 벌금, 정치권리박탈, 재산몰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환경범죄에 있어서 위의 형벌종류는 原則상에서 모든 환경범죄의 처벌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단 환경범죄가 비록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만 이는 사회일반의 경제발전과 긴밀한 內在的 연계가 존재하고 있기에 단순 권리침해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死刑制度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환경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도 기타 일반범죄와 마찬가지로 死刑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회발전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經濟主體의 창조성과 적극성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환경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死刑을 폐지하였다.

自由刑에 있어서 환경범죄의 危害性의 大小에 근거하여 管制, 拘役, 유기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行爲者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자유형을 적용하고 있고 환경범죄에서 자유형의 적용을 突出하고 있다. 財産刑에 있어서 <형법>은 재산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특히 벌금형의 적용을 확대하여 재산형으로 자유형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환경범죄는 법인의 過失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책임의 경우가 많고 법인에 대한 형벌방식은 재산

27)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수정안> (4),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통과.

형중의 벌금형과 재산몰수형이 제일 적절하므로 법인의 환경범죄에 대해서는 주로 재산형을 적용함으로써 맹목적으로 경제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다소 制止하고 통제할 수 있다. 그 외에 법인에 대해서는 兩罰制를 적용하고 있어 법인은 물론 법인의 대표 혹은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資格刑에 대해서 <형법>에는 정치권리박탈, 훈장, 영예칭호, 군계급 등의 剝奪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의 처벌에 있어서는 일정한 局限性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직 <형법>에 환경범죄를 처벌하는데 있어 資格刑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여기서 행정공무원, 특히 환경보호행정부문의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환경범죄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든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혹은 사사로운 정에 얽매어 환경오염 혹은 환경파괴의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瀆職罪(독직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허가기관,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이 포함된다.

IV.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중국법원의 입장

자연환경을 개발·이용하면서 경제를 발전하고 있는 인간사회에 불가피하게 逆으로 인간의 생활과 생산활동에 영향을 주는 환경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환경범죄에 대한 중국법원의 입장 혹은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겠다.

1. 中國法院의 판례²⁸⁾

중국에서의 환경보호에 대한 형법의 적용을 보면 종전에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문제를 환경행정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위주로 하였는데 지금은 형법에 환경범죄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범죄에 대한 판례활동도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아래에 중국환경범죄 판례중 중요한 몇 사건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28) 中國法院의 最初の 환경오염사건: 1979년 9월 12일, 강소성 蘇州市人民化工廠 직원 장XX가 근무시 업무소홀로 28톤의 액체 청산나트륨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하고 蘇州와 부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10월 27일, 蘇州市 中級人民法院에서는 公開審理를 통해 장XX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法院은 당시 이미 제정되었고 아직 實施하지 않은 <형법>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품관리규정을 위반한 사고죄로 유기징역 2년의 형벌을 가하였다. 이는 중국법원에서 최초로 판결한 환경오염범죄사건으로 환경오염범죄행위에 형사제재를 한 先例가 되고 있다.

사례1: 청산나트륨 폐기물 投河사건²⁹⁾:

1991년 8월 30일, 上海市嘉定縣鹽鐵河와 江蘇省太倉縣瀏河경내에 운송선박이 청산나트륨 폐기물을 강물에 투입함으로 水域을 엄중히 오염하고 대량의 물고기와 수생생물이 죽는 특대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인민폐 210만원에 달하였다.

사건을 보면 江蘇省張家港市 항구향양화학공장을 도급받은 조xx는 폭리를 取得하기 위하여 공장에 청산나트륨 폐기물 처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989년 1월, 上海장구공장과 청산나트륨 폐기물처리협의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1989년 1월에서 1991년 8월까지 조xx는 진xx, 왕xx, 장xx, 왕xx 등을 지시하여 장xx의 배를 임대하여 상해장구공장에서 25차에 걸쳐 294톤의 청산나트륨 폐기물을 운반도중에 上海市嘉定縣鹽鐵河와 강소성 태창현瀏河에 투입하였다. 이 사고는 즉시에 발견됨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처리를 하였기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上海市中級人民法院에서 이 사건을 수리하고 1992년 8월 17일, 主犯 조xx를 投毒罪로 사형에 집행유예 2년, 政治權利를 終身 剝奪하는 형벌에 처하고, 기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부동의 유기형에 처하였다.

이 사건은 建國이래 환경보호사법 관례중의 중요한 형사판결이다. 사건발생 당시 刑法에는 아직 환경범죄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유사한 罪인 投毒罪로 처벌하였다.

사례2: 山西 天馬文化用紙廠 特大環境污染事件³⁰⁾

1997년 10월 上旬, 山西省運城市 天馬文化用紙廠의 污水池가 터져 대량의 오수가 황하의 引黃干渠에 흘러들어 고여 있게 되었다. 그후 위 공장의 실수로 污水가 안읍저수지관리위원회가 관할하는 관촌저수지에 흘러들어 41만mm³나 되는 저수지가 엄중히 오염되었다. 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인민폐 35.8만여 원이나 된다. 이는 형법개정 후에 발생한 최초의 '破壞環境資源保護罪'사건으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산서성 운성시 인민검찰원은 重大環境污染罪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인민법원은 1998년 9월 12일, 법원심리를 통하여 위 회사에서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수를 배출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시킨데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판결에서 법인 대표를 징역2년에 벌금 인민폐 5만원, 기타 민사배상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피고가 상고를 하였지만 2심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裁決을 하였다.

29) 喬世明 <環境損害與法律責任> 中國經濟出版社 1999, 375-377면.

30) 형법 개정 후 최초의 환경범죄사건이다.

사례3: 貴州省 獨山縣 中南選冶廠事件³¹⁾

2001년 3월 28일, 獨山縣 中南選冶廠에서는 관계 부문의 허가 없이 임의로 150톤의 “礫泡渣”를 구입하여 공장 내에 방치해 두었다. 비온 뒤 형성된 오폐수가 인근마을의 생활우물로 침투하였다. 그 외에 공장에서는 工人들을 지시하여 폐기물을 공장 외의 웅덩이에 버리게 하여 빗물로 인하여 인근의 주민들의 생활우물로 침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334명의 주민들이 비소중독을 하였고 수채와 농업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인민폐 115,737.82원에 달하였다.

2002년 2월 28일, 貴州省 獨山縣 인민법원에서는 중대 環境汚染事故罪로 회사대표를 5년의 유기형과 인민폐 1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중국에서 환경범죄의 처벌에 대한 판례는 지금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종전에는 마땅한 법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行政處分の 형식으로 대체한 것이 많았지만 지금은 형법에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고 또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높아지면서 환경범죄 관련 판례도 많아지고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도 엄해질 것으로 본다.

2. 판례를 통해 본 중국환경범죄에 존재하는 문제

1997년 <형법>개정 후 지금까지 全國적으로 16건³²⁾의 환경범죄사건을 종결하였고 그 외에 일부 사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그 사건들을 정리하여 보면 重大環境汚染事故犯罪사건이 9건이고, 環境監管失職犯罪³³⁾(환경감독과 관리에 대한 失職罪)사건이 1

31) <http://www.cenews.com.cn> 2002.10.26.

32) <http://www.cenews.com.cn> 2002.10.26

33) 環境監管失職罪는 1997년 형법 개정시 새로이 증가한 죄명(형법 제408조)으로 最高人民法院이 1999년 9월 9일에 통과한 <關於人民檢察院直接受理立案偵察案件立案標準的規定(試行)> 제17조의 규정을 보면 “環境監管失職罪는 환경보호에 감독하고 관리할 직책이 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이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지지 않고, 직책을 이행하지 않고 혹은 착실히 직책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야기하여 공공과 개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고 혹은 사람의 상해나 사망케 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행위를 말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죄의 입안과 수리기준을 보면 1).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2). 1인 이상의 死亡 혹은 3인 이상의 重傷 혹은 10인 이상의 輕傷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일정 지역의 주민들의 身心健康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기타. 위의 기준에 도달하면 環境監管失職罪로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다. 그 외에 2001년 7월 20일에 最高人民法院에서 통과한 <人民檢察院直接立案偵察的瀆職侵權重特大案件標準(試行)>에 環境監管失職사건을 중대사건과 특대사건으로 분류하고 기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대사건의 기준은 1).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2). 2인 이상의 死亡 혹은 5인 이상의 重傷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일정 지역의 생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대사건의 기준은 1). 직접적인 경제손실이 300만 원 이상일 경우; 2). 5인 이상의 死亡 혹은 10인 이상의 重傷을 초래하였을 경우; 3). 일정 지역의 생태환경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http://www.cenews.com.cn> 2002.08.17.

건³⁴)이고, 非法處置進口固體廢物犯罪사건이 1건이고, 환경오염을 초래한 위험물사고범죄사건이 4건이고, 進口廢物批准證書를 위조한 범죄사건이 1건이다. 이는 <형법>개정 후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환경범죄사건들을 행정법에 의한 환경위법사건들로 처벌이 된 것이 아니라 형법의 환경범죄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어 환경범죄에 대한 사법실천도 활발히 진행이 되었다고 본다.

그 외에 환경보호행정부에서 범죄를 구성한 환경위법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제때에 司法機關에 移送하여 환경범죄사건을 수사하고 審理하게 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환경사고 혹은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 환경보호행정부문에 보고를 하는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환경보호행정부에서 환경사건을 접수한 후 일정한 조사와 了解를 통해 환경범죄사건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제때에 사법기관에 이송을 하여야 한다. 환경범죄사건의 이송절차는 國務院, 最高人民法院 및 公安部, 國家環境保護總局, 海關總署(세관) 등 부문의 규정에 따라 주로 重大環境污染事故犯罪사건, 環境監管失職犯罪사건, 固體廢物埋藏罪사건에 대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범죄사건을 사법기관에 이송³⁵)한다.

重大環境污染事故犯罪사건은 공소사건인 만큼 응당 公安機關 혹은 檢察機關에서 立案수사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이송절차는 주로 <刑事訴訟法>, <公安機關辦理刑事案件程序規定(공안기관의 형사사건처리절차에 대한 규정)>, <人民檢察院刑事訴訟規則(인민검찰원의 형사소송규칙)>, <行政執法機關移送涉嫌犯罪案件的規定(행정집행기관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이송할 데 관한 규정)>, <人民檢察院辦理行政執法有關移送涉嫌犯罪案件的規定(인민검찰원의 행정집행과 관련하여 이송한 범죄사건을 처리할데 관한 규정)>의 일반 규정에 따라 환경행정보호기관에서는 중대환경오염사고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이

34) 山西省陽城縣環境保護局 局長, 副局長의 環境監管失職사건: 1998년 5월, 中外合資 山西新聯友化學工業有限公司를 설립하고 생산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양성현 환경보호국은 공장주소지의 선택, 건축물의 준공시의 '三同時'제도의 위반, 허가 없이 시험생산을 진행, 불법으로 유해물질인 硫氰酸鹽이 함유한 오폐수를 방출 등을 검사하면서도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장의 오폐수배출로 인하여 2000년 4월 하순에 인근 주민들이 中毒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중독사건으로 모두 79명이 중독하고 그중 49명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1,472,119.92원에 달하였다. 사고발생 후 省, 市환경보호국에서는 연합사고조사를 하고 이 사건을 重大水污染사고로 결정지었다. 2001년 12월 21일, 양성현인민법원은 1심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환경보호국에서는 감독관리부실책임이 있지만 국장, 부국장의 책임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기에 環境監管失職罪를 構成하지 않는다는 無罪판결을 하였다. 이에 양성현 인민검찰원에서 山西省晉城中級人民法院에 抗訴를 제기하였다. 2002년 4월 9일, 2심법원에서는 양성현환경보호국의 국장, 부국장의 행위는 環境監管失職罪가 성립되고 국장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8개월, 부국장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벌에 처한다는 終審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은 형법개정 후 環境監管失職罪에 관한 유죄판결을 하였다는 최초의 판결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 <http://www.cenews.com.cn> 2002.08.17.

35) <http://www.cenews.com.cn> 2002.07.13.

되면 즉시 동 사건을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케 하여야 한다.

環境監管失職犯罪사건은 주로 최고인민검찰원의 <關於人民檢察院直接受理立案偵查案件立案標準的規定(試行)[인민검찰원의 직접 수리한 수사사건의 수리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人民檢察院直接立案偵查的瀆職侵權重特大案件標準(試行)[인민검찰원의 직접 수리한 수사사건에 있어서 속직·침권 관련 중특대사건의 기준(시행)]>의 규정에 따라 이송하여 처리한다.

固體廢物밀수범죄사건은 <關於走私犯罪偵查機關辦理走私犯罪案件適用刑事訴訟程序若干問題的通知(밀수범죄수사기관에서 밀수범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사소송절차를 적용할 데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 <固體廢物污染環境防治法(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는 고체폐기물 관련 밀수사건에 대해 밀수범죄수사기관에 이송을 하여 수사케 하여야 한다.

환경범죄를 처벌함에 있어서 존재하는 문제와 개선하여야 할 문제는 아래의 몇 가지가 있다고 본다.

1) 형법에 환경범죄에 대한 규정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세부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의 형법에는 환경자원보호과파괴죄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자원의 오염과 파괴에 대한 범죄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결과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하고 있어 환경범죄의 危險犯과 생태환경범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는 형법에 규정한 환경범죄 규정 외의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용할 마땅한 법률조항이 없어 유사한 법조항을 적용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시일 내에 형법을 개정하여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하기에 법해석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보충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도 법 해석을 통해 환경범죄와 관련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2) 因果關係의 立證問題

환경범죄사건은 公訴사건인만큼 檢察기관에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범죄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환경범죄사건을 처음부터 검찰기관에서 수사하고 자료수집을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의 상황을 보면 대체로 環境事件 혹은 事故가 발생하면 우선은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 受理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한다.

사건이 행정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보호행정법률의 규정에 따라 오염정화, 벌금, 조업 정지, 공장폐쇄 등 행정처분을 통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환경형사사건으로 판단될 경우야 公安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여³⁶⁾ 수사케 하고 公安기관에서 공소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사건을 인민검찰원에 이송하여 공소케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 관련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환경오염 혹은 파괴사실과 피해사실의 객관적인 증거의 보전, 鑑定 등의 최초의 자료를 환경보호행정부문에서 잘 보전하고 그대로 公安, 검찰에 이송하여야 한다.

3) 관련 法官에 대한 환경법률지식의 研修가 필요하다.

환경범죄사건은 新型 범죄인만큼 종전의 법률지식과 사고방식으로는 환경범죄사건을 審理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다. 통상적인 범죄이론과 법률조항만으로는 환경범죄사건을 公平, 公正하게 심리할 수가 없다. 왜냐 하면 환경범죄 관련 법률이론지식과 인과관계의 증명, 증명자료의 認定문제 등등에 대한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어 전문 환경법률지식을 갖춘 法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직은 환경범죄사건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기층(基層)인민법원³⁷⁾에서 이미 환경사건들을 수리하고 심리를 하고 있는 실정을 비취볼 때 특히 환경사건을 제일 먼저 접촉하는 기층(基層)인민법원의 관련 담당 法官들에 대한 환경법률에 대한 연수가 시급하다.

V. 나가며

중국은 환경범죄처벌에 있어서 刑法典에 환경범죄규정을 두고 있지만 처음으로 형법에 환경범죄를 규정하였고, 또 환경범죄를 사회관리질서를 방해하는 죄(妨害社會管理秩序罪)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인 입장, 즉 개발도상국에 있는 중국에서의 형법이론과 환경형법이론의 발전과 경제발전, 환경의식의 提高의 요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 중국형법에 환경범죄를 규정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할 수

36) <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法> 제6조: 公安기관의 인민경찰은 職責의 分工에 따라 아래의 직책을 이행한다. 제1항: 違法犯罪활동을 豫防, 制止하고 수사한다. 이 규정에 따라 중국의 公安기관은 형사사건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한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1차 수사는 통상 公安기관에서 진행한다.

37) 기층인민법원은 市·縣級 인민법원을 말한다. 중국법원계통의 제일 기본으로 되는 법원으로 전국에 제일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수량도 제일 많다.

있다. 다만 환경범죄를 <妨害社會管理秩序罪>의 章節에 귀속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오직 <破壞環境資源保護罪>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재산손실과 人身피해의 결과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環境危害後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부족하고 환경범죄의 전면을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환경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재산형인 벌금형에 대해서도 환경범죄행위에 따른 벌금금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환경범죄사건에 따라 벌금금액을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범죄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경제손실에 따라 벌금금액을 결정할 수 있어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된다. 지금으로서는 형법을 통한 환경범죄처벌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행정법의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行刑罰의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환경을 보호하는 하나의 有效한 방법으로 본다. 중국의 환경보호행정법률에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도 있고 行政罰에 관한 규정도 있지만 형사책임문제는 형법을 적용하면 되고, 반면에 행정벌에 대한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환경범죄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더욱 큰 피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법의 부족한 면을 보충하여야 한다.

환경범죄를 수사하고 審理하는 기관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환경범죄의 罪刑과 構成을 더욱 구체화하고 환경범죄의 처벌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환경범죄를 엄벌하는 추세에 따라 無期형과 資格刑에 관한 내용을 增設하고 환경형법의 立法과 執法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발췌부분

제2편 分則

제6장 妨害社會管理秩序罪(사회관리질서방해죄)

제6절 破壞環境資源保護罪(환경자원보호과괴죄)

제338조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토지, 水體, 대기에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傳染病原體를 함유한 폐기물, 有毒物質 혹은 기타 위험폐기물을 방출, 버린다든 가 혹은 처치하여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 혹은 사람을 상하거나 사망케 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단독 혹은 같이 부과할 수 있다.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처한다.

제339조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境外의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버린다든가 혹은 쌓아놓는 것, 처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을 같이 부과한다.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초래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 유기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한다.

국무원 관련 부문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다가 중대한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여 공공재산과 개인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혹은 인체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결과가 특별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과 벌금형을 같이 부과한다.

原料명의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체폐기물을 수입하였을 경우 본 법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0조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여 禁漁區, 禁漁期 혹은 사용이 금지된 工具, 방법으로 수산품을 포획하여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管制 혹은 벌금에 처한다.

제341조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살해한 경우 혹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진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및 그 제품을 불법으로 매매하고 운송하고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に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 혹은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狩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禁獵區, 禁獵期 혹은 사용이 금지된 공구, 방법으로 수렵을 하여 야생동물자원을 파괴한 경우 상황이 심각할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管制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제342조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여 불법으로 경작지를 占用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그 량이 비교적 커 경작지의 대량 파괴를 초래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に 처하고 벌금형을 단독 혹은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제343조 광산자원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광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채광한 것, 임의로 국가의 計劃鑛區, 국민경제에 중요한 가치가 있는 광구와 타인의 광구에 진입하여 채광을 한 경우, 임의로 국가에서 保護性採鑛政策을 실시하는 특종 광산종류에 대해 채굴하고 채광정지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정지하지 않아 광산자원을 파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에 처하고 벌금형을 단독 혹은 동시에 부과한다. 광산자원 파괴상황이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광산자원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파괴성적인 채광방법으로 광산자원을 채굴하여 광산자원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拘役に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344조 森林法の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진귀한 수목을 採伐,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제345조 森林 혹은 기타 임목을 盜伐하여 그 수량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에 처하고 벌금형을 단독 혹은 동시에 부과한다. 그 수량이 엄청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수량이 특별히 클 경우 7년 이상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森林法の 규정을 위반하여 森林 혹은 기타 임목을 濫伐하고 그 량이 비교적 클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 량이 엄청

클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林區內에서 도벌, 남벌한 임목이라는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구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형, 拘役 혹은 管制에 처하고 벌금형을 단독 혹은 동시에 부과한다. 상황이 특별히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고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국가급 자연보호구내의 森林 혹은 기타 임목을 도벌, 남벌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제346조 單位가 본 절 제338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한 죄를 범하였을 경우 단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직접적인 主管人員과 責任人員에 대해서는 본 節 各條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주제어: 환경범죄 환경형법 환경자원보호과괴죄(破壞環境資源保護罪)

【참 고 문 헌】

- 王秀梅 <破壞環境資源保護罪> 人民公安출판사, 2003.
杜 澎 <破壞環境資源犯罪研究> 中國方正출판사, 2003.
蔡守秋 <環境資源法學> 人民法院출판사, 2004.
劉仁文 <環境資源保護與環境資源犯罪> 中信출판사, 2004.
趙秉志 <刑法新教程> 中國人民大學출판사, 2001.
馬克昌 <刑法學> 高等教育출판사, 2003.
付立忠 <環境刑法學> 中國方正출판사, 2001.

【Abstrakt】

Environmental Crime in China

Lu Qing-Xi

It's few and far between tha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interested in environment. Actually the history of human being's development are exploiting the nature and the human being also got punishment from the nature because of such development, For example, global warming, desertification, weather unusual changing and so on.

China is a huge country, s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problems are different and complicat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area. There are many environment problems happened before and also many new problems are breaking out now. But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and the lawmaking were late in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didn't attach great important to the environment pollution in 1970', even they established the criminal law in 1979, the contents of environment crime were very feeble.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the environmental problem were getting more serious, even many illegal acts happened. but there were no criminal regulations to control, instead they used the executive regulations. Later the environmental lawmaking developed and some criminal regulations were made. For exampl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ild animals protection law>>, <<the mining resources law>> etc. But most of the criminal clauses are abstractly and actually the performance are very difficult after all. In the middle of 1980', some scholars proposed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criminal lawmaking, that was to add technical articles about environment crime to criminal law. After 1990, the Chinese government brought in the market economy system. In the cause of only pursuing the economical profits and ignoring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the environment pollution were getting

more serious and also brought a heavy loss to the property. To provide against such a problem, the government called many experts to researched in the subject of environmental crime and many scholars of the judicial world also published many thesis and books on such a subject. Finally, the government added the charge of "destruction of environmental resources protection", Even though there are only 9 clauses about the charge, the legal basis of publishing environmental crime are prepared in China.

Even China have established technical clause about environmental crime in Criminal law, it is the first practise after all and also they haven't covered a wide range. So China should fill up the shortages of establishing environmental crime regulation continually.